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5. 8.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86호로 2025년 8월 14일 전승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합성 제고 및 가명 정보 처리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 보호 및 이용 활성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5. 8. 14.~2025. 8. 2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활용이 행정·산업 전반의 핵심 자원으로 부각됨에 따라, 기존에는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개인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신설됨.
-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기 개정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는 **안 제14조의2**에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심의·자문 사항에 ‘가명정보 적합성·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가명정보의 무분별한 처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도 ▲관계기관·단체 의견 수렴 및 조정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 범위를 확대함.
- 한편, 현재 위원회는 법정 의무 설치대상이 아님에 따라 현재

까지 구성된 바는 없으나,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 만큼 향후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를 대비하여 심의·자문사항을 신설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4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는 1)법 제28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규정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명정보의 처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가명정보의 활용 및 분석을 통해 영등포구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1)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